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 약정 체결지원사업

사업목적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확인 및 연동제 교육 • 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등 연동 약정 체결 지원

지원규모 1,000개사 내외(정부 지원 100%)
* 업체 당 최대 4건(확인서는 업체당 최대 3건, 컨설팅은 업체당 1건만 지원)

지원대상 『중소기업기본법』상 중소기업*
*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~5호(위·수탁기업), 하도급법 제2조제2항~3항(원·수급사업자)

지원내용

구 분	지원 내용	대상
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	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중 원재료(재료비) 금액을 확인하여 10% 이상인 **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**	수탁기업 (수급사업자)
연동 약정 컨설팅	연동제 교육,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 **연동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**	위탁·수탁기업 (원·수급사업자)

*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, 연동 약정 컨설팅 중 택일하거나 모두 신청 가능

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까지 (상시모집)

신청 방법 접수처 이메일로 신청 서류 제출
* 납품대금연동제 누리집(납품대금연동제.kr) 모집공고문 참조

접수 및 문의처

구분	기관명	접수처	문의처
관리기관	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	pis@win-win.or.kr	02-368-8962, 8929, 8939
협력기관	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(이노비즈협회)	aidenkim@innobiz.or.kr	031-628-9680
	중소기업융합중앙회	rldus210@k-sca.or.kr	042-331-0588
	중소기업중앙회	yjcho@kbiz.or.kr	02-2124-3134
	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(메인비즈협회)	kg24@mainbiz.or.kr	02-2230-2179
원가분석 전문기관	(재)동양경제연구원	cost@deri.or.kr	051-294-8414
	(사)미래경제전략연구원	ljh4672@fesi.or.kr	010-4304-4672
	(재)청우산업발전연구원	csm@cwid.or.kr	02-6951-1591
	(사)한국경영분석연구원	ecost@kiba.re.kr	02-558-2045
	(재)한국종합경제연구원	cyj@ktei.or.kr	02-6269-9621
	(재)한국경제조사연구원	sbs@keri.or.kr	031-776-3350
	(사)한국물가정보	roundish@kpi.or.kr	031-870-1031
	(사)한국물가협회	josa@kprc.or.kr	02-799-0790
	(사)한국응용통계연구원	koris1@koris.or.kr	02-785-6070
컨설팅 전문기관	한국표준협회	jyleedw5@ksa.or.kr	02-6240-4853
	한국생산성본부	hschoi@kpc.or.kr	02-724-1198
	㈜한국능률협회컨설팅	yeondong@kmac.co.kr	02-3786-0766

* 접수처 중 택 일 하여 신청 서류 제출(중복 신청 불가)
** 관리기관, 협력기관 제출 시, 관리기관에서 전문기관 배정 / 전문기관 제출 시, 해당 전문기관에서 즉시 지원 예정

납품대금 연동제 문의 및 상담안내

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및
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/지역혁신과, 납품대금연동확산지원본부

NO	지방청	전화번호
1	중소벤처기업부	044-204-7942, 7948
2	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	02-2110-6341, 6348
3	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	051-601-5188
4	광주·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	062-360-9158
5	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	031-201-6924
6	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	032-450-1144, 1145
7	대전·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	042-865-6131
8	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	041-415-0634
9	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	043-230-5331
10	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	052-210-0050
11	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	033-260-1621
12	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	063-210-6434
13	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	055-268-2585
14	대구·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	053-659-2265
15	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(납품대금연동확산지원본부)	02-368-8969, 8962, 8929, 8770, 8470
16	중소기업중앙회 (납품대금연동확산지원본부)	02-2124-3134
17	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(납품대금연동확산지원본부)	031-628-9680
18	중소기업융합중앙회 (납품대금연동확산지원본부)	042-331-0588
19	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(납품대금연동확산지원본부)	02-2230-2155, 2179

※ 자세한 사항은 납품대금연동제 누리집(납품대금연동제.kr) 공지사항의 **"납품대금연동제 표준연동계약서 가이드북"**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연동제 누리집의 "온라인상담"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는 수·위탁거래 종합포털(smes.go.kr/poll) 내 '익명제보센터'로 제보해주세요.
※ 제보자의 인적 사항 및 아이피(IP) 주소를 수집하지 않으며, 조사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익명성 보호를 최우선 고려

따듯한 연대의 실천

납품대금 연동제

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공감하며 상생의 문화를 확산하는 것
납품대금 연동제로 이루어 집니다.

납품대금 연동제를 담은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
'23년 10월 4일부터 시행

중소벤처기업부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

납품대금 연동제란?

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,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*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(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4호)

***납품대금 연동이란? :**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(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)

적용대상

위탁기업	대기업, 중견기업, 중기업, 공기업 등
수탁기업	중소기업, 중견기업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위탁을 받는 3년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)

납품대금 연동 절차

납품대금 연동제 흐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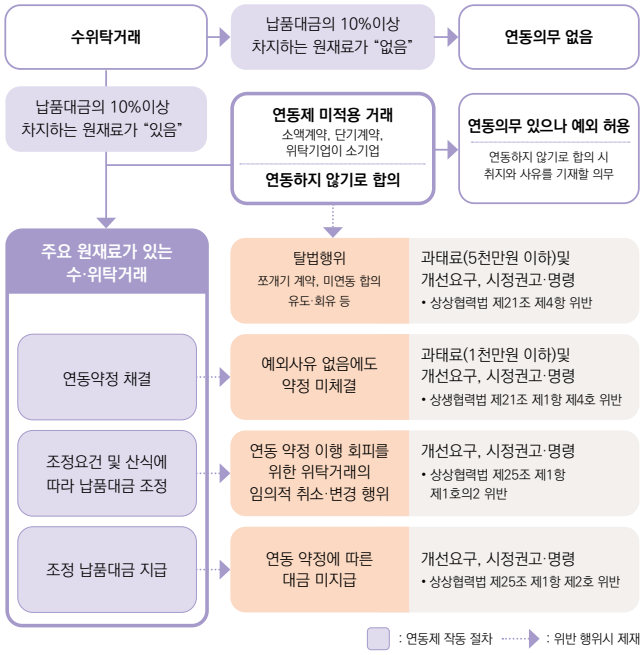

❶ 연동약정의 작성

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·위탁거래에 해당하여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거래인 경우,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 수탁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연동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

※ 연동약정서에는 법정기재사항(물품등의 명칭, 주요원재료 등)이 모두 포함되어있어야 함

❷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확인 및 납품대금 조정분 산출·조정

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연동약정에서 정한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원재료의 기준가격에 대한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,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된 납품대금을 산출합니다.

❸ 조정된 납품대금의 지급

위탁기업은 연동약정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합니다.

❹ 서류 비치

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연동약정서와 미연동 약정서를 상생협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1조에 따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.

납품대금 연동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

❶ 물품등의 명칭	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용역 등을 위탁한 물품, 부품, 반제품 및 원료 등의 명칭
❷ 주요 원재료	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% 이상인 원재료
❸ 기준지표	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'주요 원재료'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 예시 런던금속거래소(LME, London Metal Exchange), 한국은행(www.bok.or.kr), e-나라지표(www.index.go.kr), 조달청(www.pps.go.kr), 산업통상자원부(www.motle.go.kr),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
❹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	조정일에 원재료 기준가격*의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시점 *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 예시 • 기준시점 :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(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)의 전월(평균) • 비교시점 : 조정일의 전월(평균) ※ '기준시점'은 대금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, '비교시점'은 이번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음
❺ 조정요건	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(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 등). 단, 변동률의 범위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0~±10% 이내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함
❻ 조정주기	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고 납품대금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
❼ 조정일	조정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
❽ 조정대금 반영일	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
❾ 연동산식	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 예시 납품대금 = 직전에 적용된 납품대금+(비교시점 원재료기준가격-기준시점 원재료 기준가격)x원재료 중량x 반영비율*(100%) *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납품대금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. 변동분의 반영비율을 100% 정하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만 위·수탁기업이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. 다만, 상생협력법상 벌점 경감 산정 시에는 반영비율이 50% 이상인 계약만 인정(상생협력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6))

고환율 시대를 대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 방안

납품대금연동제를 통하여 환율 변화로 인한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.

환율 자체는 원재료의 가격이 아니어서 연동제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설정 시 환율 변동이 반영되도록 연동약정 체결이 가능합니다.

환율을 반영한 연동약정 예시
〈 납품대금 연동표 〉

❶ 납품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	동 케이블(CC-001)
❷ 납품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	동
❸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	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(전기동 고시가) ※LME고시가(원) = [전월 LME 동평균가격(USD)+프리미엄(USD)] x 환율(원/USD)
❹ 원재료 가격의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	기준시점: 조정일의 전전월 (평균) 비교시점: 조정일의 전월 (평균)
❺ 조정요건	±5%이상 변동
❻ 조정주기	1개월
❼ 조정일	매월 1일
❽ 조정대금 반영일	매월 1일
❾ 연동산식	조정될 납품단가(단위: 1개) =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× 동 중량(2kg) + 5,000원
❾-1 반영비율	100%
❿ 기타사항	-

※ 상황

1) '24년 5월 1일 계약 체결 후 6월 1일(조정일)이 도래:

기준지표: (기준시점)'24.4월 11,872천원/ton→(비교시점)'24.5월 13,318천원/ton

구분	전월 LME 평균(USD)	프리미엄 (USD)	환율 (원/USD)	산출금액(원)	전기동 고시가(원)
2024.4	8,675.63	160	1,343.68	11,872,259	11,872,000
2024.5	9,482.43	160	1,381.18	13,317,931	13,318,000

*전기동 고시가(원)은 100원 단위 절사

2) 기준지표 변동률(%): $[\frac{13,318-11,872}{11,872}] \times 100 = 12.18$ 이므로 조정요건 충족(5% 이상 변동)

⇒ **기존 납품단가**: 11,872천원*/ton × 2kg(=0.002ton) + 5,000원
= 23,744원 + 5,000원 = 28,744원
* 계약체결 당시 기준지표를 고려하여 단가가 산정된 것으로 가정

⇒ **조정될 납품단가**: 13,318천원/ton × 2kg(=0.002ton) + 5,000원
= 26,636원 + 5,000원 = 31,636원
* 동 LME 시세 및 환율 상승에 따라 기존 단가 28,744원보다 2,892원 증액 조정